식의약 법률 제·개정 알림('24.2.13. 공포)

법률명	의결 법률안 주요내용	시행일	담당부서 (연락처)
식품위생법	거짓·부정한 방법으로 식품 등*의 한시적 기준·규격 인정 및 유전자변형식품의 안전성 심사 등을 받은 경우, 취소 및 벌칙** 근거 마련 * 식품·식품첨가물, 기구·용기·포장 ** 5년이하 징역/ 5천만원이하 벌금	공포 후 3개월	식품안전 정책과 (043-719-2011)